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'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'이 포함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 · 생애주기별 · 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함. 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(인)

2025년 4월 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

○ 법률 제20884호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사회서비스 실태조사"를 "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제1호부터 제8호까지"를 "제1호, 제2호,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"로 한다.

2의2.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사회서비스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지역별 · 생애주기별 · 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,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

2.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제정·개정문.